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 고 인 소○○ (86****-1****), 대학생
주거 대전 동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중구 이하 생략
검 사 윤중현(기소),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래(국선)
판 결 선 고 2013.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대전 동구 효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cck***'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본디스크(<http://www.bondisk.com>)에 접속한 후 계

시판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영상을 '(궁극의근X상X)아빠몰래엄마와여동생을!!'이라는 내용으로 설명하며 게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려 받도록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고,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에 게시하며 "(궁극의근X상X)아빠몰래엄마와여동생을!!"이라고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고,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으로 연출된 여자가 그녀의 오빠와 성행위를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종록 _____